

忠州市議會 第148回 定例會
2010.09.16 (목) 11:00

條例案審查報告書

-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總務委員會

條例案審查報告書

1. 심사경과

조 례 안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
<input type="checkbox"/> 충청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 8. 25	2010. 8. 25	2010. 9. 15	2010. 9. 15	기획감사과장
<input type="checkbox"/> 충청주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세정과장
<input type="checkbox"/> 충청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세정과장

2. 제안설명요지

(1) 충청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읍·면 위임사무인 상수도 검침업무를 상수도과로 이관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 제고

2) 주요내용

- 읍면 위임사무 삭제, 상수도과로 이관
 - 상수도 검침업무
 - 상수도 사용료로 인한 정수처분

[2] 충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행정안전부의 『2010년 지방세 탈루·은닉세원 조사계획』으로 시달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개정 표준안을 반영코자 「충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규정 신설(안 제2조 제1항제4호)
-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규정 신설(안 제3조제1항제8호)

[3]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의 지방기업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사업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 기업에 재산세 감면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1844)에 따라 충주시 시세감면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신규투자 및 신규고용시 고용보조금을 받는 고용창출기업에 대해 재산세 100분의 50 감면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조례안은

읍·면 위임사무인 상수도 검침업무와 사용요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정수처분을 상수도과로 환원하고자 하는 사항임

현재 상수도 검침업무는 동지역의 경우 상수도과에서 개인에게 위탁하여 주부검침원 19명이 처리하고 있으며

읍·면지역의 경우 주덕읍, 수안보면, 양성면, 금가면, 동량면 등 5개 지역의 검침원이 인근 2~3개 면을 함께 처리하고 있으며

읍·면 검침원의 업무는 검침, 체납액 독려, 고지서 전달 등 상수도관련 민원을 상대하고 처리하는 대체적으로 단순 반복적인 일을 맡아 처리하고 있음

매년 상수도 공급은 증가 추세로 읍·면 지역에서 1인당 담당하는 급수전 수가 증가하여 검침부재로 민원발생 우려가 있으며

현재 읍면 검침원은 무기계약직근로자로 해당 읍면장이 채용 하고 있어 읍·면별 인력의 효율적 배치에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상수도 검침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검침업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상수도과에서 통합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2) 충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징수촉탁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징수촉탁으로 지방세를 징수한 공무원에게 징수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대상 중 지방세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3조에는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징수촉탁에 대한 포상금을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

○ 징수촉탁운영은 지방세법에는 규정하고 있으나 잘 운영되고 있지 않고 있었으나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2009. 11. 1부터 활성화 되어 2009년도 우리시가 징수한 타시·군 체납액은 17건에 3백만원임.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세입징수 포상금 조례 표준안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관련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주소지와 사용지가 다른 차량에 대한 지방세 징수촉탁제도 활성화와 징수촉탁 교부금의 수입 등 세입 증대는 물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3)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조례안은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의 지방기업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사업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 기업에 재산세 감면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에 따라 충주시 시세감면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은

충주시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기업이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부터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을 하는 내용임.

- 조례 개정시 재산세 감면대상 고용창출기업은 한국팜비오 등 3개사이며 재산세 감면 예상금액은 약 295만원임

- 검토결과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면제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식경제부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의 지방기업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사업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기업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지방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4. 질의·답변 요지

(1)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 업무가 상수도과로 환원 시 인원증원은 되나?

○답변 : 인원 증원은 없고 5명의 검침원이 9개 지역을 담당하게 됨.

▶질의 : 검침원을 상수도과에 채용할 경우 유기적인 관계가 조금 떨어질 염려는 없는가?

○답변 : 풀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판단됨.

▶질의 : 검침원이 읍면에서 상수도과로 갈 경우 남이 있는 직원의 업무가 늘어나진 않는가?

○답변 : 확인한 바에 의하면 검침원들이 남는 시간 다른 업무에 활용하지 않고 있음.

▶질의 : 순환배치 할 경우 현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진 않는가?

○답변 : 단순 업무이므로 하루 이틀이면 파악할 수 있고
한곳에 오래 있을 경우 가보지 않고 검침을 해서 나중에 누진이
되는 병폐가 발생할 수 있음.

(2) 충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 징수촉탁에 대표적인 세목은 무엇인가?

○답변 : 자동차세입

(3)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 없음

5. 심사결과

- (1)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 충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3)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6. 붙임

- (1)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2) 충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3)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